

돼지 가축공제

어떻게 추진되나

축 협이 금년부터 돼지에 대한 가축공제를 실시한다.

화재 및 재해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돼지 가축공제는 지금까지 많은 양돈농가로부터 조속한 시행을 요구받아 왔었으며 특히 작년에는 전국 양돈축협 조합장들께서 건의문을 통해 동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3월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돼지 가축공제에 대하여 축산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사업목적

첫째, 축산농가 경제적 안정을 지원한다.

화재, 풍해, 수해로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고 산지시세의 80%까지 보상하여 원상회복을 지원한다.

둘째,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화재, 풍해, 수해로 인한 사고축을 축협과 개업수의사 입회하에 소각 또는 매몰처리하여 중간상인 개입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도축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셋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단계적으로 가축공제 가입농가에 대하여 무료약품 공급 및 진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

글 · 임종철(축협중앙회 공제추진팀장)

으며 그렇게 될 경우 사고예방을 통한 생산비 절감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제료(보험료)의 50%는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2. 사업내용

○대상가축 : 돼지

○가입조건 : 돈사별 가입

○가입기간 : 1년 원칙(다만, 월단위 가입가능)

○공제료부담 : 농가(50%), 축산발전기금보조(50%)

○공제요율(%)

구 분	1지역		2지역	
	1급	2급	1급	2급
요율	0.94	1.08	1.06	1.20

[지역구분]

1지역	2지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 지역구분은 풍수재 발생 빈도에 따른 구분이며, 1급, 2급 은 축사시설에 따른 구분임.

〈가입예시〉

○ 돼지 1,000두를 두당 10만원씩 계산하여 1억 원을 가입할 경우(2지역 2급기준) 연간 총공제료 및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공제료는?

▶ 적용요율 : 1.20%

▶ 총공제료: 1,200,000원 (=100,000,000원(가입금액)×1.20%)

▶ 농가납입 공제료(보험료)(50%보조) : 600,000원

○ 2000년 총 지원예산(소.돼지.말) : 43억원(축산발전기금)

*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보상하는 손해

화재, 풍해, 수해로 인한 손해

○ 보상한도 :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지시세의 80%까지 보상

3. 민영보험사와 차이점

최근 민영보험사에서도 가축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요율을 단순 비교하면 축협보다 보

〈축협과 민영보험사 상품비교〉

구분	요율(%)	보조	보상상고	자기부담금
축협	-0.94~ 1.20	50%	화재, 풍해, 수해	- 손해액의 20% 예) 손해액 : 6,000만원 공제금(보험금) : 4,800만원(80%) 자기부담 : 1,200만원(20%)
OO 회사	-0.35	없음	화재, 낙뢰	- 가입금액 1억5천만원 이상 : 손해액 5,000만원까지 자기부담. 예) 손해액 : 6,000만원 보험금 : 1,000만원 자기부담 : 5,000만원
	-0.45	없음	화재, 낙뢰	- 가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 : 손해액 1,000만원까지 자기부담. - 가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 : 손해액 500만원까지 자기부담.

험료가 낮다. 그러나, 보험료가 낮게 책정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단순히 보험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입하지 말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사고 및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권유한다.

예를 들어 1억6천만원을 가입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6,000만원의 돼지 피해를 입은 경우 축협은 피해액 6,000만원의 80%인 4,800만원까지 보상하나 민영보험사는 (요율 0.35% 상품에 가입한 경우) 피해액 6,000만원에서 5,000만원(자기부담금)을 제외한 1,000만원을 보상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에 있어서 보상금액은 축협 4,800만원과 민영보험사 1,000만원으로 3,8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4. 맺는말

금년에는 돼지 가축공제 사업을 통하여 양돈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축사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농가가 전액 부담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돼지 가축공제가 실시됨에 따라 화재 및 수해 발생시 원상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양돈농가는 그만큼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돼지 가축공제는 양돈농가를 불의의 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 가입하여 불의의 손실에 대비하였으면 한다.

끝으로, 금년에 배정된 50%보조예산(축산발전기금)이 소진될 경우 현재로서는 사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가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가입을 원하는 양돈농가는 해당지역 축협에 문의하여 가급적 빨리 가입 할 것을 권장하고 싶다. **양돈**

(문의: 축협중앙회 공제사업단 02-2224-8734 담당 서재연)